

1. 개정이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최근 개정된 국제기준을 반영하고, 운용 폐지된 항행안전시설 등에 관한 기술기준을 삭제하는 한편, 개정되는 국제기준이 효과적으로 국내 반영될 수 있도록 국내 규정을 ICAO의 규정 체계로 개선하고자 함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개정 전문안 첨부

2. 주요내용

가. 고시의 적용 대상시설을 ICAO 부속서 10 등에서 정한 시설과 그와 관련된 항공기 탑재장비에 대해 확대 적용하도록 함(안 제2조)

나. ICAO의 최근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국내 운용폐지 및 설치·운영을 하지 않는 시설에 관한 기술기준을 삭제하고 ICAO 규정 구성체계로 개선(안 별표 1 및 별표 2)

- ICAO는 유럽의 Galileo 및 중국의 BeiDou 위성 성능에 대한 표준 및 권고사항을 채택하고 그에 따른 기술기준 등을 반영
- 국내 운용 폐지 및 향후 국내 구축 및 운용이 불필요한 시설의 기술 기준 삭제
- ICAO의 기술기준이 제개정되어 국내 반영이 필요한 경우 효과적으로 검토 및 국내 적용될 수 있도록 ICAO 규정의 계층구조로 개선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항시설법」,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앞에 “제1장 총 칙”을 삭제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7조의 항행안전 무선시설과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10 및 관련 문서(Documents)에 고시되는 시설, 동 시설과 관련된 항공기 탑재 장비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삭제
7. 삭제
8. 삭제
9. 삭제

제3조 앞에 “제2장 설치 및 기술기준”을 삭제한다.

제3조제2항 중 “부속서”를 “부속서 또는 국제규정·표준”으로 한다.

제2장제3조의2를 제5조로 한다.

제6조 앞에 “제3장 설치절차 및 방법”을 삭제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설치절차 및 방법”을 “이 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운용개시 검사관”이란 운용개시”를 ““운영개시 검사관”이란 운영개시”로 한다.

제5조, 제6조,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제6조, 제7조, 제8조 및 제9조로 하고, 제5조의1 및 제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6조(중전의 제5조) 중 “항행시설이 양호한”을 “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에 적합한”으로 한다.

제7조(중전의 제6조)의 제목 “의1(성능검증)”을 “(운영전 성능확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설치자는 항행시설을 설치 중이거나 설치가 완료되는 시점에 해당 항행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지상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지상점검에 합격한 시설이 성능확인점검 대상 항행시설인 경우 설치자 또는 항행시설관리자는 운영 전 성능확인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③ 지상점검 및 성능확인점검을 합격한 시설이 비행검사 대상 항행시설인 경우 설치자 또는 항행시설관리자는 비행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

제8조(중전의 제7조)제2항 중 “항행안전시설 유지보수자 교육훈련 규정”을 “「항행안전시설 유지보수자 교육훈련 규정」”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운용개시 검사)”를 “(운영개시 검사 및 승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중전의 제1항) 중 “운용개시 승인신청”을 “운영개시 승인신청”으로, “경우에는 운용개시”를 “경우, 운영개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중 “운용개시”를 “운영개시”로 한다.

① 지방항공청장 또는 항공교통본부장은 항행시설의 설치를 완료한 후에 제7조에 따른 시설의 운영전 성능확인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운영개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의 제목 “(운용개시 검사관의 자격)”을 “(운영개시 검사관의 자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중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운용개시”를 “운영개시”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운용개시 검사방법)”을 “(운영개시 검사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운용개시”를 “운영개시”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운용개시 검사 결과의 처리)”를 “(운영개시 검사 결과의 처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운용개시 검사”를 “운영개시 검사”

로, “운용개시조건”을 “운영개시조건”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청장 또는 본부장은 운용개시”를 “지방항공청장 또는 항공교통본부장은 운영개시”로, “통보받”을 “통보 받”으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운용개시 검사 사후관리)”를 “(운영개시 검사 사후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청장 및 본부장으로부터 운용개시”를 “지방항공청장 및 항공교통본부장으로부터 운영개시”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운용개시)”를 “(운영개시)”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운용”을 “운영”으로, “제10조1항”을 “제10조제1항”으로 한다.

제16조 중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을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으로 한다.

별표를 별표 1로 하고,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장 총칙	<삭 제>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항행안전무선시설과 이와 관련된 장비 등에 적용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7조의 항행안전무선시설과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10 및 관련 문서(Documents)에 고시되는 시설, 동 시설과 관련된 항공기 탑재 장비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무지향표지시설(NDB)	1. 삭제
2. 전방향표지시설(VOR)	2. 삭제
3. 거리측정시설(DME)	3. 삭제
4. 계기착륙시설(ILS), 마이크로파착륙시설(MLS)	4. 삭제
5. 레이더시설(ASR/ARSR/SSR/ARTS/ASDE/PAR)	5. 삭제
6. 전술항행표지시설(TACAN)	6. 삭제
7. 위성항법시설(GNSS/SBAS/GRAS/GBAS)	7. 삭제
8. 자동중속감시시설(ADS-B, TIS-B, FIS-B)	8. 삭제
9. 다변측정감시시설(MLAT)	9. 삭제
제2장 설치 및 기술기준	<삭 제>
제3조(설치 및 기술기준 등) ① 항행안전무선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서 정한 설치 및 기술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설치 및 기술기준 등) ① - -----별표1 및 별표2-----

② 제1항의 별표에서 규정하지 않은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은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의 관련 조항을 적용한다.

제3조의2 (생략)

제3장 설치절차 및 방법

제4조(용어정의) 설치절차 및 방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6. (생략)
7. “운용개시 검사관”이란 운용개시 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자를 말한다.

8. 9. (생략)

제5조(품질관리) 설치자는 해당 항행시설이 양호한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치 전 과정에 걸쳐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의1(성능검증) 설치자는 해당 항행시설의 성능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별표1 및 별표2-----

-----부속서 또는 국제규정·표준-----.

제5조 (현행 제3조의2와 같음)

<삭 제>

제4조(정의) 이 고시-----
-----.

1. ~ 6. (현행과 같음)
7. “운영개시 검사관”이란 운영개시 -----
-----.

8. 9. (현행과 같음)

제6조(품질관리) -----
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에 적합한 -----
-----.

<삭 제>

1. 새로 개발되었거나 항행정보에 영향을 주는 기능 또는 성능을 개선(Up-grade)한 LOC, GP, DME 또는 GBAS 장비는 설치하기 전에 최초 비행검사에 합격한 후 최소한 6개월 이상의 시험운영 기간 동안 추가로 3회 이상의 비행검사에 합격하여 성능과 안정성을 입증할 것
2. GP 및 LOC 시설은 장비 자체의 특성 또는 주변 환경의 변화 등으로 성능이 변화된 경우 장비를 조정하여 정상적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출력신호 위상과 전력분배량 등을 조장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출 것

제6조(운영전 성능확인) ① (생략)

② 지상점검에 합격한 시설이 성능확인점검 대상 항행시설인 경우 설치자 또는 항행시설관리자는 운영 전 성능확인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생략)

<신 설>

제7조(운영전 성능확인) ① (현행과 같음)

② -----

---- 운영 -----
-----.

③ (현행과 같음)

④ 설치자는 해당 항행시설의 성능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

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새로 개발되었거나 항행정보에 영향을 주는 기능 또는 성능을 개선(Up-grade)한 LOC, GP, DME 또는 GBAS 장비는 설치하기 전에 최초 비행검사에 합격한 후 최소한 6개월 이상의 시험운영 기간 동안 추가로 3회 이상의 비행검사에 합격하여 성능과 안정성을 입증할 것
2. GP 및 LOC 시설은 장비 자체의 특성 또는 주변 환경의 변화 등으로 성능이 변화된 경우 장비를 조정하여 정상적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출력신호 위상과 전력분배량 등을 조장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출 것

제8조(운영준비) ① (현행과 같음)

② ----- 「항행안전 시설 유지보수자 교육훈련 규정」 --- 따라-----

-.

제7조(운영준비) ① (생략)

② 항행시설관리자는 항행안전 시설 유지보수자 교육훈련 규정에 의거 당해시설에 대한 자격인증서를 소지한 자만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 (생 략)	제9조 (현행 제8조와 같음) <삭 제>
제9조(운용개시 승인) 청장 또는 본부장은 항행시설의 설치를 완 료한 후에 제4호에 의한 각종 운영 전 성능확인 결과 문제가 없고 운영준비를 완료한 경우에 는 이를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 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운영개 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운용개시 검사) <신 설>	제10조(운영개시 검사 및 승인) ① 지방항공청장 또는 항공교통 본부장은 항행시설의 설치를 완 료한 후에 제7조에 따른 시설의 운영전 성능확인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 관의 운영개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 운영개시 승인신청----- 경우, 운영개시 ----- ----- ③ ----- -----자 중----- ----- 운영 개시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u>운용개시</u> <u>승인신청</u> 을 받은 경우에는 <u>운용</u> <u>개시</u> 검사를 시행한 후 적합할 경우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검사관의 자격이 있는 <u>자중</u> 해당 검사를 담당할 대상자를 선정하여 <u>운용</u> <u>개시</u>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1조(운용개시 검사관의 자격) ① <u>운용개시</u> 검사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명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실 시하여야 한다. 1. 2. (생 략)	제11조(운영개시 검사관의 자격) <u>운영개시</u> ----- --.
제12조(운용개시 검사방법) 검사 관은 별지 제3호의 <u>운용개시</u> 검 사표에 명시된 검사항목에 대하 여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12조(운영개시 검사방법) ---- -----제3호서식- <u>운영개시</u> -- ----- -----.
제13조(운용개시 검사 결과의 처 리) ① 검사관은 <u>운용개시</u> 검사 를 완료한 후에 <u>운용개시조건</u> 의 만족 여부에 따라 합격 또는 불 합격 판정을 하여야 한다. ② <u>청장</u> 또는 본부장은 <u>운용개</u> <u>시</u> 검사 시에 부적합 판정을 받 은 사항을 조속히 개선하고 그 결과를 <u>통보</u> 받은 후 20일 이내 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 여야 한다.	제13조(운영개시 검사 결과의 처 리) ① ----- <u>운영개시</u> 검사- ----- <u>운영개시조건</u> -- ----- -----. ② <u>지방항공청장</u> 또는 <u>항공교통</u> <u>본부장</u> 은 <u>운영개시</u> ----- ----- ---- <u>통보</u> 받----- -----.
제14조(운용개시 검사 사후관리) 국토교통부장관은 <u>청장</u> 및 본부 <u>장</u> 으로부터 <u>운용개시</u> 검사에 대 한 조치결과를 보고받은 경우	제14조(운영개시 검사 사후관리) ----- <u>지방항공청장</u> 및 <u>항공교통본부장</u> 으로부터 <u>운</u> <u>영개시</u> -----

조치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제15조(운용개시) 항행시설의 운 용을 개시하기 위해서는 완성검 사 또는 준공확인에 합격하거 나, 제10조1항에 의한 국토교통 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항 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55조 에 의한 사전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5조(운영개시) ----- 운영 ----- ----- -- 제10조제1항----- ----- ----- ----- ---
제16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 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 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 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 ----- ---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 ·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 한 규정」----- 2025년 1월 1 일 기준으로 매 3년----- ----- ----- ----- -----.
[별표]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 <신설>	[별표 1] 무선험법시설 [별표 2] 감시 및 충돌회피 시스템